

관 보

통상산업부고시제1994-2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시 정수하는
부과금의 부과기준등에 관한 고시**

1994년 12월 31일

제 1조(부과금의 정수대상자) 석유수입시 정수하는 부과금의 정수대상은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 2조(부과금의 부과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정수단가에 정수대상물량 및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정수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석유(2호 내지 3호 제외) : 미합중국통화 1.7 \$/바렐

2. 액화천연가스 : 미합중국통화 0.0 \$/톤

3. 프로판 및 부탄 : 별도로 정함

제 3조(부과금의 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정수대상물량산정은 수입신고물량으로 한다.

제 4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는 통관일까지 석유수입시 신용장을 개설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이후 석유통관분부터 적용한다.

2. 동력자원부고시제92-12호, 제92-35호, 제93-11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폐지한다.

통상산업부고시제1994-3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판매시
정수하는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1994년 12월 31일

제 1조(부과금의 정수대상) 석유제품 판매시 정수하는 부과금의 정수대상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가 판매

하는 등유로 한다.

제 2조(부과금의 부과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금액은 판매등유 1ℓ 당 10원으로 한다.

제3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판매등유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시 부과금 부과대상물량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면세, 공제, 환급물량을 제외한 특별소비세 납부 대상물량을 부과금 징수대상물량으로 한다.

제4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과금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한 특별소

비세 부과일을 판매한 날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이후 판매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판매한 부과금 부과 대상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공자원부고시 제94-138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통상산업부고시제1994-4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제외 대상에 관한 고시

1994년 12월 31일

영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 부과금의 징수를 제외하는 석유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황함량 0.3%이하인 저유황 방카씨유
 - 가. 발전용
 -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용

2. 하이 솔벤트
3. 페트로울럼 벤젠
4. 에비가스

부 칙

1.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공자원부고시 제93-114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통상산업부고시제1994-5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한 고시

1994년 12월 31일

제 1조(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은 나프타와 다음 각호의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1. 가스오일

2.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엘 포함)

3. 프로판 및 부탄(석유화학공업원료용에 한함)

제 2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통관일이 속한 월의 익월 25일까지로 한다.

제 3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부과금이 징수유예되는 금액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으로 한다.

제 4조(담보의 제공) ① 부과금의 연기대상자는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될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과금의 연기대상자(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연기 대상자 석유의 실수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약속어음에는 영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백지어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징수유예금액이 연기기간 만기일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장은 백지어음에 연기받은 금액과 연기기간 만기일을 자동추심일로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1. 전기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정부로 부터 석유정제업 허가를 받은 상업중류시설능력 10만B/D이상인 자

2. 전기말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석유화학공업체

③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자가 연기기간중에 제2항의 규정된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후부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5조(연기의 확인)

1.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석유의 통관전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와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확인서를 한국석유개발공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 연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한국석유개발공사장은 부과금 연기대상자의 부과금 확인서에 부과금 납부연기의 사실을 표시하여 자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 6조(약속어음의 지급거절시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에는 당해 약속어음 발행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연기되지 아니하며 지급거절된 금액은 그후 최초의 석유 수입시에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 부과금액과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환급)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분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은 환급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의 사용일이 속한 월의 익월 25일 이후에 지급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력자원부고시 제92-10호 및 상공자원부고시 제93-116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통상산업부고시제1994-6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 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영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1.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수출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제품
3.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어업허리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석유제품 중 수산청장 또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석유제품

4.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에 외화로 납품하는 석유제품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유제품

② 석유제품을 다음 각호의 공업원료용(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1. 나프타 및 나프타를 대체하는 석유제품(가스오일, 천연가스액상(중질엔지滴滴 포함), 프로판 및 부탄에 한다)을 석유화학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나프타 및 나프타를 대체하는 석유제품을 비료제조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등유를 노말파라핀 제조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가 유황함량 1.6% 이하인 저유황중유 또는 수입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

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정제업자의 비축용 석유로 비축하거나 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비축용 석유로 판매하는 경우

⑤ 석유정제업자가 유황함량 0.3%이하인 저유황 방카씨유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거나,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자에게 집단에너지 공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 2조(부과금의 환급대상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을 이행한 자

다만, 제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로 하고,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석유제품 공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로 하되, 수출을 위탁한 자나 석유제품공급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위탁한 자가 수출자와 합의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반출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 제품을 사용한 자

3. 제1조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동 제품을 공급한 자

4. 제1조제4항의 경우에는 동 제품을 비축 또는 판매한 자

제 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영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급액은 아래산식에 의거 산출되며, 환급대상부과금 단가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의 당해월 통관분 원유 또는 당해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의 원화납부액을 그 부과금을 납부한 당해월 원유 또는 당해 석유제품의 통관량으로 나눈 평균부과금단가(이하 “부과금단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15조의3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공급 당해월에 통관된 석유가 없거나 당해월의 당해 석유공급물량이 당해월 통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1.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부과금단가)

2.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부과금단가)

이 경우 부과금단가라 함은 공급회사별 당해월 원유 또는 당해석유제품의 부과금단가를 가중평균한 것으로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 ×
(부과금단가)

4. 저유황중유 또는 수입액화천연가스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 국내 생산공급의 경우

(환급대상 저유황중유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부과금단가)

나. 수입공급의 경우

(환급대상 저유황중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량) ×
(부과금단가)

5.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비축용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부과금단가)

6. 석유정제업자가 유황함량 0.3%이하인 저유황 방카씨유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거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

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집단에너지 공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부과금단가)

제 4조(환급대상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① 제3조제1호의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은 수출면장상의 물량에 제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제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한국군납수출조합장이 발급한 납품확인서 및 외화입금증명서상의 물량, 제1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된 물량에 제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수입석유제품의 경우에는 수입면장상의 물량으로 하고 제6조제1항의 소요량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나프타 및 나프타를 대체하는 석유제품을 석유화학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별지서식 6)에 의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하는 구매물량에 부과금환급율을 곱한 물량으로 한다.

2. 나프타 및 나프타를 대체하는 석유제품을 비료제조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별지서식 6)에 의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하는 구매물량으로 한다.

3. 등유를 노말파라핀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 사용량확인서(별지서식 6)에 의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하는 구매물량에 부과금환급율을 곱한 물량으로 한다.

③ 제3조제3호의 경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은 수출면장상의 물량으로 한다.

④ 제3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의 산출은 수요처의 용도확인구매증명서(별지 서식 7)상의 물량에 제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나목의 경우에는 제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5호의 경우에 비축용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영제11조의 4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확인하는 물량으로 하며, 제3조제6호의 사내판매물량의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가 확인하는 물량으로 한다.

⑤ 제3조제6호의 경우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시수입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국내 공급물량에서 공제하되, 수입물량이 공급물량보다 더 클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전량 공제될 때까지 월별공급물량에서 계속 공제한다.

제5조(부과금환급율의 산정) 나프타 및 나프타를 대체하는 석유제품을 석유화학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거나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금환급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나프타 및 나프타를 대체하는 석유제품을 석유화학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석유화학공업체는 매 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8)을 작성하여 주산물,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부산물 및 사내판매 물량에 대하여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석유개발공사장에게 제출하고,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하여는 수요처의 용도확인구매증명서(별지서식 7)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장에게 제출한다.

2. 한국석유개발공사장은 석유화학공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석유화학공업체별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량중에서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수출용으로 판매한 물량을 확인하여 이를 차감한 물량과 주산물중 연료용으로 판매한 물량(이하 “부과금부과대상물량”이라 한다)을 전체 원료투입량으로 나눈 비율에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나프타 분해제품 기준소요량(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 및 제5-3-3조에 의한 소요량)을 곱하여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하고 1에서 차감한 비율을 부과금환급율로 산정한 다음, 이를 석유화학공업체에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환급율은 당해업체의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다만, 전전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석유화학공업체의 부과금환급율은 나프타분해업체, BTX제조업체, 혼합업체 및 기타석유화학공업체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한 석유

화학공업체의 부과금환급율중 최저치를 각각 적용한다.

②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금환급율은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등유분해제품 기준소요량(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 및 제5-3-3조에 의한 소요량)의 역수의 비율로 하되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제6조(소요량) ① 제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될 기준소요량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 및 제5-3-3조에 의해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수출용원자재 기준소요량고시를 적용한다.

②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 제2항의 소요량 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소요량증명서상의 소요량을 적용한다.

제7조(단위)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물량단위는 바렐로 한다. 다만, 수입액화석유가스(LPG) 및 수입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으로 한다.

제8조(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 부과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별지서식 1, 2)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석유개발공사장은 신청서 접수후 10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급금지급)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환급금 지급명령관은 환급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금액을 신청인의 거래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급금지급지시서(별지서식 3)를 영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환급통지서(별지서식 4)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금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에 이체하여 환급금지급지시서에 표시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조(환급금 지급사실의 통보) 한국은행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금지급필통지서(별지서식 5)를 환급금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조(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 환급금지급명령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환급된 금액에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서식 : 생략

부 칙

1.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수출 또는 국내공급 사용된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3. 동력자원부고시 제92-11호, 상공자원부고시 제93-115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 잘못 알려진 경제상식 □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 ?

우리는 흔히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국민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한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잠재성장률(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인플레를 추가로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을 넘어서 지나친 고도성장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6~7%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선진국이 될수록 인력부족 등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90~91년간 주택 200만호 건설추진 등 과도한 건설투자에 힘입어 9%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자금·인력·토지 등 생산요소의 침각한 부족현상이 나타나 금리·임금·땅값 등이 치솟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마저 악화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품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92~93년간 깊은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를 경험했던 것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된다 하겠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

서 판단해야 한다.

마치 마라톤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리면 막판에 힘이 떨어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인플레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여 그 속도를 완급조절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성장률관련 주요 지표
(단위 : %, 억 달러)

구 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성 장 률	6.9	9.6	9.1	5.0	5.6
(건설투자)	(16.8)	(31.2)	(13.0)	(△0.6)	5.8
소비자물가	5.7	8.6	9.3	6.2	4.8
경 상 수지	50.5	△21.8	△87.3	45.3	3.8
임금상승률	21.1	18.8	17.5	15.2	12.2
지가상승률	32.0	20.6	12.8	△1.3	△7.4

